

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업체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영업소 주소	전화번호	
	업종	자본금	
	사업시행 예정 연월일		

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1. 업종별 면허증·허가증 사본 1부 2. 사업시행자의 인력·기술·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. 사업시행계획서 1부 ※ 제1호의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협의	→	심의	→	지정	→	지정 통보
신청인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국가유산청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)		